

대전지방법원 2021. 3. 10 선고 2020가단12093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원경

피 고 1. A

2. B

변론 종결 2021. 2. 3.

판결 선고 2021. 3. 10.

주 문

1. 피고 A과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2011. 1.1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8,105,905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 A은 원고에게 28,105,905원과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6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당진등기소 2018. 7. 11. 접수 제300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은 취지의 판결.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판사 강길연

별지

부동산 목록

1. 충청남도 당진시		대 248㎡
2. 충청남도 당진시		전 761㎡
3. 충청남도 당진시		전 529㎡, 골.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원고는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회사 보유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사로써, 소의 C(개명 전:D)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기관입니다.

피고들은 소의 C의 형 또는 누나로 추정되는 사람으로, 피고들과 C의 모친 E 사망으로 인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이라 합니다)을 단독상속함으로써 원고 등 C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한 사람입니다(갑제1호증의 1내지3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2. C에 대한 양수금 채권(피보전채권)

C은 아래 표 기재 각 금융기관과 각 대출과목에 해당하는 거래를 함에 있어 여신거래 약관과 회원 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지연손해금은 위 각 금융기관이 정한 연체이율에 따른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약정에 따른 거래를 하여 오던 중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현재 아래 표와 같은 액수의 채무가 있습니다(2020. 6. 22. 기준, 갑제2호증의 1, 2 각 원리금계산서).

	회사명	주채무자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기한	대출잔액 /미수이자	연대보증인 /합계금	연체율 (%)
1	F 캐피탈	C /소액신용대출	01.9.12. /04.9.6.	1,000,000 /4,883,426	/5,883,426	12
2	G카드	C /신용카드	/	7,860,000 /32,042,115	/39,902,115	12
계	총 채무원리금 45,785,541원 / 채무 원금 8,860,000원					

F캐피탈은 2003. 4. 30.경, G카드는 2003. 9. 30.경 C에 대한 원리금 채권을 원고에게 각 양도하고, 그 무렵 양도통지를 하였습니다(갑제3호증의 1 채권양도증서, 2 채권양도통지서, 갑제4호증의 1 채권양도증서, 2 채권양도통지서).

원고는 C을 상대로 위 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542661 양수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2. 1.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이는 2017. 5. 5. 확정되었습니다(갑제5호증 지급명령).

3. C와 피고 A 사이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가액배상) 청구

가.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대법원 판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

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 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라고 합니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5377 판결)” 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2) 이 사건의 경우

갑제1호증의 1내지3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C의 형 또는 누나이자, C의 모친 망 E의 자녀로 추정되는 피고 A이, E 사망에 따른 공동상속인으로는 피고 A 외

에 적어도 C, 피고 B가 있을 것임에도, 2011. 1.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이라 합니다)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술한 판례에 비추어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은 그 성질상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미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 C이¹⁾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한편 앞서 본 판례에 비추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인 피고 A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심지어 피고 A은 C의 형 또는 누나로 보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C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를 한다는 것을 잘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1) 추후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C의 채무초과 상태에 관하여 입증할 예정입니다.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의 가액배상이 허용된다.” 라고 합니다.

또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위 판례의 태도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2. 10. 10. 선고 2012나46721 판결에 의하면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합니다.

2) 이 사건의 경우

근저당권(2007. 1. 29.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73,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H조합)이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사해행위인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이루어진 후인 2018. 6. 12.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습니다(갑제1호증의 1내지

3). 이처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으므로 가액배상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그 가액의 산정은 가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 즉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²⁾에 가까운 현재 기준 이 사건 각 토지 가액 합계 103,248,600원(공시지가 기준³⁾, 강제5호증의 1내지3 각 토지대장 참조)에서, 말소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일단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하면 73,000,000원⁴⁾)을 공제한 금액인 30,248,600원(= 103,248,600원 - 73,000,000원)과,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가까운 2020. 6. 22. 기준 취소채권자의 채권액(45,785,541원(위 2.항 참조)) 중 적은 금액인 30,248,600원의 한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 A은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가액배상)으로 30,248,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피고 B와 C 사이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피고 B는 피고 A의 사해행위(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8. 7. 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8. 7. 11. 접수

2) 위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참조

3) 당진시 I 토지 : 248㎡ × 개별공시지가 77,700원 = 19,269,600원
 당진시 J 토지 : 761㎡ × 개별공시지가 65,100원 = 49,541,100원
 당진시 K 토지 : 529㎡ × 개별공시지가 65,100원 = 34,437,900원
 합계 103,248,600원 (=19,269,600원+49,541,100원+34,437,900원)

4) 추후 H조합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피담보채무액을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037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피고 B는 C과 피고 A의 형제 또는 자매로 추정되는바, 피고 A의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고서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위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5. 결론

원고는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르게 되었으니,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청구원인

1. 소장 및 준비서면 기재 원고 주장을 모두 원용합니다.

2. 피보전채권 :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

현재 아래 표와 같은 액수의 채무가 있습니다(2020. 12. 3. 기준, 갑제12호증의 1, 2 각 원리금계산서).

	회사명	주채무자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기한	대출잔액 /미수이자	연대보증인 /합계금	연체율 (연)
1	F 캐피탈	C /소액신용대출	01.9.12. /04.9.6.	1,000,000 /4,937,196	/5,937,196	12
2	G카드	C /신용카드	/	7,860,000 /32,464,751	/40,324,751	12
계	총 채무원리금 46,261,947원 / 채무 원금 8,860,000원					

3.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은 즉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가까운 2020. 11. 9. 기준 이 사건 각 토지 가액 합계 437,112,000원(감정평가서 제6쪽 참조)에서, 말소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사해행위 당시인 2011. 1. 10. 기준 34,042,476원(2020. 10. 22. 제출 금융거래정보회신서 참조)) 중 이 사건 각 토지의 담보 부분 상당액을 공제

한 금액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토지 외에 아래 표 기재 다른 4필지의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설정되어 있었으므로(갑제11호증의 1내지4), 이 사건 각 토지 가액에 서, 순전히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던 부분을 제외한 가액 합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8,105,905원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물건소재지	토지가액 (A)	토지가액 비중	피담보채무 안분액 ⁵⁾ (B)	C(=A-B)	상속지분 상당액 (=C*1/6)	가액배상 청구액
1	당진시 I	33,232,000	7.60% ⁶⁾	2,587,228 ⁷⁾	30,644,772	5,107,462	28,105,905
2	당진시 J	88,276,000	20.19%	6,873,175	81,402,825	13,567,137	
3	당진시 K	61,364,000	14.03%	4,776,159	56,587,841	9,431,306	
4	당진시 L	56,672,000	58.16%	19,799,104	234,440,896	39,073,482	
5	당진시 M	50,736,000					
6	당진시 N	111,440,000					
7	당진시 O	35,392,000 ⁸⁾					
	합계	437,112,000	100.0%	34,035,666	403,076,334	67,179,387	

따라서 위 금액과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가까운 2020. 12. 3. 기준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위 2.항 기재 46,261,947원) 중 적은 금액인 28,105,905원의 한도로 가액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4. 결론

5) = 34,042,476원 × 토지가액 비중

6)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

7) 원 미만 버림(이하 동일)

8) 위 표 4 내지 7항 기재 부동산 합계액 : 254,240,000원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별지

부동산 목록

1. 충청남도 당진시 I 대 248㎡
2. 충청남도 당진시 J 전 761㎡
3. 충청남도 당진시 K 전 529㎡. 끝.